안세재경저널 회원용 · 2025년 8월 13일 (수) · 주간 제33호 · 통권 제1740호 · 2025 세제개편안 구독료 월 30000원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경영박사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5/ 8/ 13 통권 1740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2025년 세제개편안 주요 추진과제〉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자본시장 활성화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편
- 국제결제은행(BIS)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지역성장 지원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초등 저학년 자녀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납세자 권익보호
-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
- 관세 중복조사금지 대상 및 사전통지기간 합리화
-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포함

◉응능부담원칙 세부담 정상화
- 법인세율 환원
-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 금융·보험업 교육세 개편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과세체계 합리화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확대
-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DMTT) 도입

◉조세탈루 방지
- 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 마련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40호 / 주간 33호 2025. 8. 13. (수)

·발 행 인 : 이윤선
·제 작 : ㈜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④ 즉답(010-2672-2250)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⑧ CEO·CFO 경영에세이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목 차

▣ 2025년 세제개편안

Ⅰ. 세제개편 추진경과 및 여건

1. 경제 여건 2
2. 재정 여건 2

Ⅱ. 2025년 세제개편 추진방향 4

Ⅲ. 2025년 세제개편안 주요 추진과제 6

Ⅳ.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내용 6

1. 경제강국 도약 지원 7
2.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13
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21

Ⅴ.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25

▣ 2025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Ⅰ. 경제강국 도약 지원 27

Ⅱ.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37

Ⅲ. 세입기반 확충 및 제도 합리화 43

◈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8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 기획재정부, 2025. 7

정부는 7.31.(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세제개편안 추진 여건

1 경제 여건

□ (경기 여건) 정치 불확실성 완화 등에 따라 최근 소비 중심으로 회복 움직임이 있으나 건설투자 부진이 여전한 가운데,

ㅇ 美 관세 부과 양상 등 대외 불확실성 상존

□ (구조적 여건) 인구구조 변화, 생산성 향상 정체 등으로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

ㅇ 국가 간 첨단산업 분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며 AI·디지털·탄소중립 전환 등 글로벌 기술·산업환경 변화 가속화

2 재정 여건

□ (재정 여건) 복지수요 및 사회적·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 수요 증대

ㅇ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

*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24.11 사회보장위원회) : ('24) 15.5 ('40) 20.3 ('65) 26.9

ㅇ 기후·팬데믹 등 재난 위험 및 국가 간 미래먹거리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요구

□ (세입기반) 조세부담률*이 낮은 상황에서 감세정책 및 구조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세

입기반 약화

* 국가별 조세부담률('23, %)
  : (한) 19.0 <'24P, 17.6> (OECD) 25.0 (영) 28.6 (독) 23.4 (일) 21.2

○ 최근 경기둔화 및 감세정책 영향으로 2년 연속 국세수입 감소*

* 국세수입(조원) : ('21) 344.1 ('22) 395.9 ('23) 344.1<△51.9> ('24) 336.5<△7.5>

○ 고착화된 조세지출*과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구조적 여건 변화로 중장기 세입기반도 약화될 우려

* 국세 감면액(조원) : ('19)49.6 ('20)52.9 ('21)57.0 ('22)63.5 ('23)69.8 ('24P)71.4

참고 '25년 세제개편안 추진경과

□ 대내·외 각계 의견수렴 및 성과평가 등을 거쳐 개정안 마련

❶ (개정 건의)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세무사회, 국세청, 관세청 등 32개 단체·기관에서 약 1,360건 세법개정* 건의

* 현장 중심 소통을 위해 건의 기관을 방문하여 개정건의 청취
  - 중기중앙회·세무사회(4.10), 국세청·조세심판원(4.10), 대한상의·중견기업연합회(4.11)

❷ (비과세·감면 평가) 일몰 도래 또는 신설 예정 조세지출에 대해 조세특례심층평가*·예비타당성평가** 28건 진행

* 감면액 연 300억원 이상 일몰도래 의무심층평가(23건), 주요 조세지출 임의심층평가(4건)

** 감면액 연 300억원 이상 신설 예정 조세지출 대상 예비타당성평가 : 1건

❸ (내부 논의) 주요 쟁점에 대해 조세정책심의회* 수시 개최

*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세법간 정합성을 점검하는 절차로 세제실장, 국장 및 정책과장 등으로 구성

❹ (대외 의견 수렴) 경제·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학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

구 분	내 용
▸ 관계기관 간담회	▸ 경제단체, 금융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 세제분야 전문가*와 세제개편 방향 및 주요 과제 논의 * 소득·기업·재산·소비·국제조세·관세 등 6개 분야로 구성
▸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 중장기적 시야에서 경제·재정여건을 전망하고, 정책방향 점검 * 조세 분야 및 경제·사회·복지·환경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

II 2025년 세제개편안 추진방향

진짜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 ↻
↺ 경제 성장과 조세제도 합리화를 통해 세입기반 확충

비전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
기본 방향	1.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 2.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제 3. 공정한 성장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추진 전략	경제강국 도약	민생 안정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합리화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서민·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소상공인 등 지원 및 상생협력 지원	과세체계 합리화
	지역성장 지원	납세자 권익보장 및 납세편의 제고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III 2025년 세제개편안 주요 추진과제

1.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자본시장 활성화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편 ‣ 국제결제은행(BIS)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지역성장 지원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2.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초등 저학년 자녀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납세자 권익보호	‣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 ‣ 관세 중복조사금지 대상 및 사전통지기간 합리화 ‣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포함

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응능부담원칙 세부담 정상화	‣ 법인세율 환원 ‣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 금융·보험업 교육세 개편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과세체계 합리화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확대 ‣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DMTT) 도입
조세탈루 방지	‣ 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 마련

Ⅳ 세제개편안 상세내용

1 경제강국 도약 지원

◇ 미래전략산업 지원 등을 통한 경제산업 대도약

Ⅰ.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 AI · 반도체 산업 지원 】

□ 국가전략기술* AI 분야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조특령 · 조특칙)

*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R&D · 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 연구개발공제율(%) : (일반) 2~25 (신성장원천기술) 20~40 (국가전략기술) 30~50
    투자세액공제율(%) : (일반) 1~10 (신성장원천기술) 3~12 (국가전략기술) 15~30

○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국가전략기술급 AI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추가

<국가전략기술 AI 분야 세부기술>

세부기술	기술 설명
생성형 AI 기술	텍스트, 이미지 등을 생성하는 AI 기초모델 개발
에이전트 AI 기술	기계장치와 연동하여 자율적 행동 및 산업공정 운영에 활용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학습 알고리즘(메타러닝, 강화학습 등)을 활용하여 AI 성능 향상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작은 기계 등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량화 · 최적화
인간 중심 AI 기술	인간이 AI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 복귀 시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 시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28.12.31.)

□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 (관세법)

○ 반도체 제조장비, 항공기 등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기간 연장(최대 3→10년)

* 완제품보다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율이 높은 물품으로, 지정공장에서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해 20~100% 관세 감면

【 K-문화 · 콘텐츠 산업 지원 】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28.12.31.)

❶ 적용콘텐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상 웹툰 등(게재 · 판매된 분)
❷ 공제비용	인건비, 저작권료, 프로그램 비용 등 웹툰 등 제작에 소요된 비용 * 홍보비, 정부보조금 및 간접비용 제외
❸ 공제율	[대 · 중견기업] 10% / [중소기업] 15%

□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국내 영상제작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현 행) [기본공제율(%)] (대) 5 (중견) 10 (중소) 15 / [추가공제율(%)] (대 · 중견) 10 (중소) 15
(개정안) [기본공제율(%)] (대 · 중견) 10 (중소) 15 / [추가공제율(%)] (대 · 중견) 10 (중소) 15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중소 · 중견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해 3% 세액공제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소 · 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해운 · 방위 산업 지원 】

□ 국가전략기술 미래형 운송 · 이동수단 분야 세제지원 확대 (조특령 · 조특칙)

○ 해운 경쟁력 제고를 위해 AI 지능형 자율 운항 기술 및 관련 설비 제작 · 실증 시설을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

○ 미래차에 대한 연구 및 투자 지원 확대를 위해 자동차 자율 주행 관련 세부기술 확대

<국가전략기술 미래형 운송 · 이동수단 분야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구 분		내 용
세부기술	선박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신설)
	자동차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신설)
	자동차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기존 기술 범위 확대)
	자동차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기존 기술 범위 확대)
사업화시설	선박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관련 설비 제작·실증 시설 (신설)
	자동차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관련 사업화시설 (신설)

□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편 (조특법)

* 국적선사 이용 비중이 높은 화주에 대해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의 1% 및 전년대비 증가한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 우수 선·화주기업 세액공제 요건 개편(운송비용→물동량) 및 원양노선에 대한 추가공제를 신설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기본 공제	요건	총 해상운송비용 중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이 40% 이상	총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40% 이상
	금액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의 1% + 전년대비 증가비용의 3%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의 0.5%
추가 공제	요건	< 신 설 >	원양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25% 이상
	금액		국적선사에 지출한 원양 운송비용의 1%

□ 방위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령 · 조특칙)

○ 방산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및 관련 시설을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

* 방산물자를 수출 및 공급망 안정화 목적으로 개조·개발하는 기술

【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조특법)

* 상시근로자 증가 시 기업규모·소재지 등에 따라 연 400~1,550만원 세액 공제(최대3년)

❶ (공제구조) 고용 감소 시 추징 방식에서 고용 유지 시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제액 구조 재설계

1인당* 공제액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우대 (청년 등**)	1,450(3년) → (1년차)700+(2년차)1,600+(3년차)1,700	1,550(3년) → 1,000+1,900+2,000	800(3년) → 500+900+900	400(2년) → 300+500
기본	850(3년) → (1년차)400+(2년차)900+(3년차)1,000	950(3년) → 700+1,200+1,300	450(3년) → 300+500+500	-

* 중견 · 대기업의 경우 '고용증가인원 - 최소 고용증가인원' 기준
**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❷ (공제요건) 중견·대기업은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중견기업 5명, 대기업 10명) 충족 시 공제 적용

❸ (사후관리) 고용 증가 인원 중 일부 고용 감소 시 고용 유지분에 대한 공제는 유지*
* (현행) 고용 일부 감소 시 고용 감소분에 대해 공제액 전액 추징 및 고용이 감소한 해부터 공제 전액 배제

❹ (추가공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6.12.31.)
*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중견기업 900만원, 중소기업 1,300만원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지원* 강화 (조특령)

*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해외사업장 양도·폐쇄하거나 해외사업장 축소 후 3년 이내에 국내사업장 신·증설 시 소득·법인세·관세 감면
: (소득·법인세) 7년 100%+3년 50% (관세) 5년간 완전복귀 100%, 부분복귀 50%

○ 해외사업장 축소완료 이전*에 국내로 부분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
*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해외사업장 축소 완료하는 경우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 해외사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28.12.31.)

❶ 출자법인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법인
❷ 출자자산	출자법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의 주식등
❸ 외국법인 (① and ②)	① 출자법인이 80% 이상 지분 보유 ② 외국법인은 외국자회사가 영위하던 사업을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계속
❹ 과세특례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 산입

2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 자본시장 활성화 】

□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조특법)

○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허용 (적용기간: '26~'28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

* 공모 · 사모펀드, 리츠, SPC 등 제외

❶ 적용요건 (① and ②)	①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② ⅰ)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ⅱ)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상장법인
❷ 대상소득	현금배당액(중간 · 분기 · 결산배당)
❸ 적용세율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3억원) 20%, (3억원 초과) 35%

□ 투자 · 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조특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의 미환류소득(기업 소득 중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액으로 사용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20% 추가과세

○ 기업의 배당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 상향(~'28.12.31.)

구 분		현 행	개 정 안
환류대상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액	(좌 동) + 배당
기업 소득 비율	투자포함형	60~80%*	65~85%
	투자제외형	10~20%**	20~40%

* 시행령에서 70%로 규정 / ** 시행령에서 15%로 규정

□ 국제결제은행(BIS)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신설 (조특법)

* 정부가 가입주체인 국제금융기구는 가입·설립협정 등을 통해 국내원천 이자소득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 BIS는 각국 중앙은행이 가입주체로서 비과세 협정이 없음

○ 국제결제은행(BIS)이 국내 예금, 환매채(RP) 등 원화표시 자산 투자 시 해당 투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

* 이자소득, 배당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 자산 양도차익 중 대체취득분에 대해 과세이연(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 적용

○ 대학 재정건전화 지원을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시 과세이연 대상에 유가증권(상장법인 주식, 국·공채) 추가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대상자산	토지, 건축물	토지, 건축물	유가증권
과세방식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 산입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 산입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기존 유가증권에서 신규 유가증권으로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과세이연 적용

【 벤처투자 지원 】

□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를 통해 벤처기업 투자 시 출자·투자금액의 5% + 증가분의 3%를 법인세 세액공제

○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시 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3→5%) 및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직접투자) 투자금의 30~100%, (간접투자) 10%

○ 벤처투자조합, 코스닥벤처펀드,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 (조특법)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벤처기업 간접 출자 시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28.12.31.)

* ❶ 개인 및 벤처투자회사가 SPC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등의 양도차익 등 비과세
  ❷ 내국법인이 SPC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등 취득가액에 대해 세액공제(5%)
  ❸ SPC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3 지역성장 지원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15→40%)

* (현 행) (~10만원) 100/110, (~2천만원) 15%
  (개정안) (~10만원) 100/110, (~20만원) 40% (~2천만원) 15%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채무 상환 등을 위한 자산매각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 (현행)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 → (개정안)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산입

□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조특법)

○ 공장·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기간 확대*

* (적용대상) 수도권(연접지역 포함), 광역시를 제외한 낙후지역은 최대 감면기간 적용
(감면기간) 이전 지역에 따라 7~12년인 감면기간을 8~15년으로 확대

○ 이전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 신설*

* 지방 투자누계액의 70% +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지방이전 세액감면기간 확대>

	낙후지역1」		그 외 지역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수도권[2]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 감면 없음 〉	
수도권 연접지역[3]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3년 50%	7년 100% +4년 50%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도시[4]	7년 100% +3년 50%	10년 100% +5년 50%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10년 100% +5년 50%	7년 100% +3년 50%	7년 100% +4년 50%

1」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고용 · 산업위기지역
2」 중소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본사 이전은 미적용)
3」 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홍천군(내면 제외), 횡성군
4」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포항시

□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 등 현물출자 시 취득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세 납부이연 또는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 신설(~'28.12.31.)

□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등 지방경제산업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 제주투자진흥지구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및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2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 서민 · 중산층,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성장 · 안정 지원 확대

1. 서민 · 중산층 · 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 다자녀가구 지원 】

□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조특법)

* (기본공제)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
(추가공제) [7천만원 이하자] 대중교통 · 전통시장 · 문화비 사용금액 300만원
[7천만원 초과자] 대중교통 · 전통시장 사용금액 200만원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
-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

기본공제 한도	현 행 (자녀수 무관)	개 정 안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

□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법)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

□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 확대 (소득법)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공무원·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 (대상) 비과세 소득 대상에 「사학연금법」상 특례 적용 교직원*이 학교의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포함

* 사립학교가 아님에도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는 기관에 종사하는 교직원
(예: 카이스트등 연구기관, 국립대학법인, 국립대학병원, 평생교육기관 등)

○ (한도) 사립학교 사무직원, 「사학연금법」상 특례 적용 교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를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인상

* (현행) 월 150만원 → (개정안) (휴직일~3개월)월 250만원, (4~6개월)월 200만원, (7개월~)월 160만원

【 교육비 부담 완화 】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소득법)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초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 수업료 등 교육비(학원비 미포함) 지출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적용(연 교육비 300만원 한도)

○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소득법)

* 본인 ·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대학생 연 교육비 900만원 한도)

○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요건* 폐지

* 현재 자녀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초과 시 교육비 공제 불가

【 주거비 부담 완화 】

□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조특법)

*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월세액(한도 연 1,0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15%/17%)

○ (대상자) 근무 목적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부부 합산 한도 연 1,000만원)

* 현재는 세대주(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 1인만 공제 가능

○ (대상주택) 3자녀 이상인 경우 적용대상 주택 규모 상향*

* (현행)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 (개정안) 지역구분 없이 100㎡ 이하

□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전용면적 85m2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지역에 관계없이 영구면세 중

□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행복기숙사('15.1.1.~'25.12.31. 실시협약 체결) 운영권, 기숙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 3년 연장(~'28.12.31.)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에게 납입액 40% 소득공제(납입한도 300만원)

** 총급여액 3천6백만원(종합소득 2천6백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및 배우자에게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 중장년층 지원 】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소득법)

○ 사적연금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4→3%)

* 연금소득(1,500만원 이하) 세율 : (55~69세) 5% (70~79세) 4% (80세~) 3% (종신) 4→3%

○ 퇴직소득 연금계좌 납입 후 장기 연금 수령 시 감면율 확대*

* 일시수령 대비 감면율: (10년 이하) 30% (10년 초과) 40% (20년 초과) 50% 감면<구간 신설>

□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조정 (조특법)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이 비과세종합저축상품에 가입(납입한도 1인당 5천만원)하는 경우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28.12.31.)하되,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가입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로 조정

【 농어업인 지원 】

□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법)

○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연 600→3,000만원)

□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출자 시 세제지원방식 전환 (조특법)

○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지원방식을 세액감면에서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

* 농지를 양도하는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한 법인이 양도 시 해당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조특법)

* 상호금융 조합원, 준조합원등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적용

○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과 소득이 낮은* 준조합원등에 대해 예탁금등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서민형ISA 가입조건과 동일한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적용

○ 다만, 농어민 외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등은 저율 분리과세 ('26년 5%, '27년~ 9%) 적용

구 분			현 행	개 정
농협·수협 산림조합	조합원		비과세	비과세
	준조합원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비과세	비과세
		총급여 5천만원 초과**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원 회원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비과세	비과세
		총급여 5천만원 초과**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 준조합원 및 준회원이 없음 / ** 종합소득금액은 3,800만원 기준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만기 수령 시 저축기간의 평균 잔액에 이자율(0.9%~4.8%)을 곱한 금액을 지급

□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등 적용기한 연장 및 추징*사유 합리화 (조특법)

* 농민이 아닌 자가 축산업용 기자재 등을 부정하게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로 공급받은 자에게 해당 부가가치세액과 가산세(부가세의 10%) 추징

○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영세율 추징사유를 농·임·어업인이 아닌 자가 영세율 적용받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을 공급받는 경우까지 확대

2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확대 및 상생협력 지원

【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

□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을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한도 2배 상향(10→20%)

구 분		손금 한도	
일반 한도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수입금액별 한도	수입금액	비율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500억원	0.2%
		500억원 초과	0.03%
추가 한도	문화비 지출분	일반한도의 20%	
	전통시장 + 지역사랑상품권	일반한도의 10% → 20%	

○ 문화비·전통시장등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손금인정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조특령)

* 폐업 · 경영악화 등 사유로 공제금 수령 시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하고, 이 외 사유로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

○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사유 중 경영악화에 해당하는 요건 완화*

* (현행)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 → (개정안) 20% 이상 감소

□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완화 (조특법)

*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재기 시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분납·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납기준도 5천만원 → 8천만원으로 상향

* (현 행) 1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3개월 이상 근로자로 근무한 자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자(배송업무종사자, 보험설계사 등)로 3개월 이상 종사한 자 추가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조특법)

* 수입금액이 연간 8천만원 이하인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100% 소득세·법인세 감면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연간 8천만원→1억 4백만원 이하로 확대

□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신설 (조특법)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매입 시 '취득가액 × 공제율'만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공제율: (폐자원)3/103, (중고차)10/110]

○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대해 공제한도(매출액 - 세금계산서 매입액)를 신설하고, 2개 과세기간(1년) 간 이월공제 허용

【 상생협력 지원 】

□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 (법인법)

* 취약계층 고용 및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기업의 사회환원 지원을 위해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소득금액의 20%→30%로 확대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를 세액공제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조특법)

○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도입 (~'28.12.31.)

* 기준내용연수의 25%→50%까지 내용연수 단축 허용

□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신보·기보, 대·중소·농어업 협력재단 등에 출연 시 10% 세액공제 등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28.12.31.)

3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 (소득법)

* 수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다만, 배우자 사망 시 적용 배제)

○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배제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사유 신설 (조특법)

*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하여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는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나,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받은 종부세 추징

○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취득 후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부세 추징 면제

□ 관세 중복조사금지 대상 및 사전통지기간 합리화 (관세법)

❶ (중복조사금지) 관세조사 사전통지에 기재된 조사 대상(기간 및 범위)을 중복조사금

지 대상으로 규정

❷ (조사통지)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조정하고, 사전통지 예외 조사의 당일통지 및 조사대상 변경 시 변경통지 의무화

조사통지 기한	현 행	개 정
■ 일반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	조사	20일 전
■ 심사·심판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전통지 기한	15일 전	7일 전
■ 사전통지 예외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한 *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신설〉	당일통지

□ 관세 사전심사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사유* 확대 (관세법)

*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해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등

○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관세 가산세(신고불성실) 면제

□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 (국기법)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 납세자가 직접 계산·납부해야하는 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 납부지연가산세를 일(日) 단위(0.022%) → 월(月) 단위*(0.67%)로 계산

* 지정납부기한 경과 1개월까지 완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효과

□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 (주류면허법)

* 세무서장이 주류 제조·저장 용기 등의 용량 등을 사용 전에 확인하는 제도

○ 주류용기 검정절차를 신고절차로 변경하고 제조면허 신청 시 별도의 주류용기 신고 생략 등 제도 간소화

□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포함 (국기법)

* 이의신청인, 심사·심판청구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만 국선대리인 지원 가능

○ 경제적 사정 등으로 심사·심판청구 등을 기한 내 제기하지 못해 고충민원*을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국선대리인 지원

* 불복청구 기간이 도과한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의 직권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

□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 (국기법)

○ 일반우편으로 발송가능한 고지세액을 50 →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원천징수세 신고 후 무납부에 따른 납부고지서도 일반우편 허용*

* (현 행) 소득세 중간예납, 부가세 예정세액, 신고 후 무(과소)납부
(개정안) 소득세 중간예납, 부가세 예정세액, 신고 후 무(과소)납부(원천세 포함)

□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소득법 · 법인법)

○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시기*('27년)에 맞추어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를 1년 유예

* '27.1.1.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입법예고중(7.7.~8.18)

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적극재정 운영 및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기반 강화

1.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 법인세율 환원 (법인법)

○ 법인세율을 '22년 수준으로 환원

과세표준(억원)	'22년	'23~'25년	개정안
~ 2	10%	9%	10%
2 ~ 200	20%	19%	20%
200 ~ 3,000	22%	21%	22%
3,000 ~	25%	24%	25%

□ 증권거래세율 환원 (증권령)

○ 국내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율을 '23년 수준으로 환원

<최근 증권거래세율 추이>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개정안
코스피	0.10%	0.08%	0.08%	0.05%	0.03%	0%	0.05%
농어촌특별세	0.15%	0.15%	0.15%	0.15%	0.15%	0.15%	0.15%
코스닥	0.25%	0.23%	0.23%	0.20%	0.18%	0.15%	0.20%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소득령)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으로 환원

구 분(종목당)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	2%	4%
보유금액*	(현행) 50 억원 → (개정안) 10억원		

* 지분율 기준 또는 보유금액 기준 충족 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 금융 · 보험업 교육세 개편 (교육세법)

○ 금융 · 보험업에 대한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 교육세율 인상

과표구간(수익금액)	현 행		개 정 안
~ 1조원	0.5%	⇨	0.5%
1조원 ~			1.0%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소득령)

* 현재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액이 주식 취득가액보다 큰 경우 법인주주는 초과분 과세

○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등*에 한하여 초과분에 배당소득세 과세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상장법인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 주주

2. 과세체계 합리화

□ 한시적 지원 종료 등 조세특례 정비 (조특법)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 중소 · 중견기업의 일반 · 신성장원천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추가공제율 적용(+2%p)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종료

* 외국인 관광객이 성형수술, 여드름 치료술 등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종료

*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청년(만19~34세)이 장기펀드 저축상품에 가입 시 납입금액(납입한도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 (조특법)

*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기업업무추진비 등 9개 항목만 세무조정 후 법인세 저율 과세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중기협동조합, 엽연초조합, 소비자생협(총 8개)

○ 과세표준 20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특례세율 상향*

* (현행) [과표 20억원 이하] 9% / [과표 20억원 초과] 12% → (개정안) 9% / 15%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확대 (소득법)

* 거주자가 이민등으로 국외전출 시 국내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국외 전출세 납부자가 5년 내 국내 재전입 시 기납부세액 환급)

○ 국외주식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 및 자산 간 과세형평을 위해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해외주식 포함

□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소득법)

* 연금계좌에서 펀드를 통하여 해외에 간접투자 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

○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대상 소득 추가

* (현행) 배당소득 → (개정안) 배당, 연금, 퇴직, 이자, 기타소득 포함

□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DMTT*) 도입 (국조법)

* Domestic Minimum Top-up Tax : 저율과세 기업 소재지국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율 미달세액 과세(소재지국 미과세 시 모기업 소재지국등으로 과세권 이전)

○ 저율 과세된 국내 소재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 과세권 확보를 위해 내국추가세 도입

* (예) 글로벌 기업의 자회사가 국내에 소재하고, 국내에서 법인세 실효세율 13%로 과세된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2%p에 대해 우리 과세당국이 과세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 확대 (종부법)

* 위탁자의 신탁재산 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신탁재산으로 납세의무 부담

ㅇ 위탁자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종부세 체납액에 대해 신탁재산 처분·운용 등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물적납세의무 적용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 추가 (국조법)

* 거주자가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는 가격

ㅇ 정상가격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시 이중과세 발생 입증 서류를 제출 서류에 추가

□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관세법)

*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납부할 관세등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등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 적용

ㅇ 관세포함 가격으로 구매한 직구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자가 직구 소비자에게 관세 상당액 수령 시* 연대납세의무 부여

* 수입신고인에게 가격정보 거짓제공에 상관없이 관세 상당액 수령 시 연대납세의무 부여

□ 우회덤핑 과세 범위* 확대 (관세령)

* 덤핑물품이 공급국 안에서 경미하게 변경되어 수입되는 경우 우회덤핑으로 보아 과세

ㅇ 덤핑물품을 제3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원재료를 제3국으로 보낸 후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 시 덤핑 과세대상에 추가

3.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 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 (상증법)

*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유증 등을 한 경우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은 상속세 납부의무 부담

ㅇ 영리법인에 유증 등을 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주주의 범위에 상속인의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추가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법인법)

* 외국본사를 위해 광고, 선전,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 수행

○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후 현황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시 과태료 부과

□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 마련 (국징법)

○ 국세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압류된 가상자산 매각 업무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규정 마련

* 현재 공매·수의계약·매각재산 권리이전·금전 배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 중

□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요건 신설 (국징법)

* 고액 체납자의 납세의무 이행강제를 위해 국세청장이 법원에 신청하여 유치장 등에 유치

○ 2년 내 체납액을 50% 이상 납부한 경우 등*은 감치 신청 제외

* 감치 실익이 없거나 양도담보권자등이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

□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 (국기법)

○ 납세자의 체납으로 인해 발송하는 독촉장 송달비용*을 해당 납세자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체납액 150만원 미만 제외)

* 송달비용(원, '25년 현재): (등기우편) 2,830 (일반우편) 430 (전자) 0

V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1 세수효과

□ 금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전년 대비)는 81,672억원

○ (증가요인) 법인세 세율 환원, 증권거래세율 환원, 교육세 과세체계 개편 등

○ (감소요인) 국가전략기술 확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등

< 연도별 세수효과 >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81,672	26,134	56,271	Δ687	Δ22	Δ24
소득세	Δ2,296	546	Δ2,192	Δ604	Δ22	Δ24
법인세	45,815	2,227	43,588	-	-	-
부가가치세	1,862	1,251	611	-	-	-
상속·증여세	66	33	33	-	-	-
증권거래세	23,345	21,400	1,945	-	-	-
기타	12,880	677	12,286	Δ83	-	-

2 세부담 귀착

(단위: 억원)

서민·중산층[1]	고소득자	중소기업	대기업	기 타[2]	합 계
Δ1,024	684	15,936	41,676	24,400	81,672

1」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인 자 (총급여 8,700만원 이하인 자)
2」 외국인·비거주자·상속인·공익법인 등 귀착 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

Ⅵ 추진일정

1 개정대상 법률 : 총 13개

□ 내국세(12개)
- ㅇ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교육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관세(1개)
- ㅇ 관세법

▮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

● 전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또는 세계재경저널을 참고하세요.

1 경제강국 도약 지원

1.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1) 국가전략기술 AI 분야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① 현행 제도

□ (R&D 세액공제) 기업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

* (공제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 R&D 세액공제 공제율(단위: %) >

구분	일반		신성장·원천기술[1]	국가전략기술[1]
	당기분	증가분		
중소기업	25	50	30~40	40~50
중견기업	8~20[2]	40	20~30, 25~35[3]	30~40, 35~45[4]
대기업	최대 2[5]	25	20~30	30~40

1)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2) (~3년)20%, (4~5년)15%, (6년~)8%
3) (~3년)25~35%, (4년~)20~30%, 4) (~3년)35~45%, (4년~)30~40%
5) 최대 2%[(R&D 지출액 / 매출액) x 0.5]

□ (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의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토지, 건물 등 제외)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단위: %) >

구 분	당기분(기본공제)				증가분 (추가공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1	5	10	+	10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15	15	25		
↳반도체	20	20	30		

※ 총 투자세액공제액 = (투자액 × 당기분 공제율) +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 × 증가분 공제율)

1) 국가전략기술 : 8개 분야*, 71개 기술, 58개 시설
   * ①반도체,②이차전지,③백신,④디스플레이,⑤수소,⑥미래형 이동·운송수단,⑦바이오의약품,⑧인공지능
2) 신성장·원천기술 : 14개 분야*, 273개 기술, 186개 시설
   * ①미래차,②지능정보,③차세대 SW 및 보안,④콘텐츠,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⑧에너지·환경,⑨융복합 소재,⑩로봇,⑪항공·우주,⑫첨단소·부·장,⑬탄소중립,⑭방위산업

② 추진 배경

□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분야가 포함('25.3월 조특법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등재

③ 개정 내용

□ (세부기술 신설)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인 주요 AI 기술들을 5개 카테고리로 정리하여 선정

세부기술	기술 설명
생성형 AI 기술	텍스트, 이미지 등을 생성하는 AI 기초모델 개발
에이전트 AI 기술	기계장치와 연동하여 자율적 행동 및 산업공정 운영에 활용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학습 알고리즘(메타러닝, 강화학습 등)을 활용하여 AI 성능 향상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작은 기계 등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량화·최적화
인간 중심 AI 기술	인간이 AI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화시설 신설) 해당 국가전략기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센터를 지정하여 AI 인프라 조성 전폭 지원

④ 적용 시점

□ '25.3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과 동일하게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

비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2)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① 현행 제도

□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 ㅇ (공제율) 기본공제율과 추가공제율*을 더한 값
  * 국내 제작비 비중 80%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한 콘텐츠에 적용
  - (기본공제율) 10%(대기업 5%, 중소기업 15%)
  - (추가공제율) 10%(중소기업 15%)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기본공제율을 추가공제율과 일치 및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ㅇ (기본공제율) 10%(중소기업 15%)
- ㅇ (추가공제율) 10%(중소기업 15%)

□ (개정 취지) 영상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③ 적용 시점

□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 분부터 적용

(3)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① 현행 제도

□ (공제대상)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임시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제외
- ㅇ 상시근로자 수는 월별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한 후에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

□ (공제액) 기업규모·소재지·우대대상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육아휴직 복귀자는 추가 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

① 기본공제	공제액(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 (2년)
	수도권	지방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	1,450	1,550	800	400
그 외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② 추가공제(1년)	공제액(단위:만원)	
	중소	중견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 (공제기간 및 사후관리) 상시근로자 수 유지시 최대 3년간 지원,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지원 중단 및 공제받은 금액 전액 추징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사후관리 방식 전환 및 공제액 구조 재설계 등

❶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을 근로계약 기간에서 실제 근로 기간으로 전환

❷ 사후관리 방식을 최초 공제후 1~2년간 고용 유지시 2·3차년도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후속공제 방식으로 전환

❸ 공제 기간중 고용이 일부 감소한 경우 고용 증가 인원 중 감소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중단하고 고용 유지분에 대해서는 공제 유지

❹ 공제액 구조를 점증 구조로 재설계

		공제액(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 (2년)
		수도권	지방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	1년차	700	1,000	500	300
	2년차	1,600	1,900	900	500
	3년차	1,700	2,000	900	-
그 외 상시근로자	1년차	400	700	300	-
	2년차	900	1,200	500	
	3년차	1,000	1,300	500	

❺ 중견·대기업의 경우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하여 고용이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 (개정 취지) 사후관리 방식 전환으로 납세협력비용이 경감되고, 상시근로자 판단기준 전환 및 점증 형태의 공제액 구조를 통해 기업의 고용유지 유인을 강화

○ 현행 사후관리 방식은 상시근로자 수 감소에 따른 추징세액 계산 방식이 매우 복잡하고,

- 납세자 입장에서 사후 경정청구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

* 공제기간 중 고용 일부 감소시 잔여 공제기간 동안 전체 고용 증가분에 대해 공제 배제 → 기업 입장에서는 과세연도 종료시마다 세액공제 신청하는 것보다 최종적인 고용 증가 유지분만을 반영하여 사후 경정청구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

○ 기업의 장기고용 유인 강화를 위해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을 개선*하고, 공제액 구조를 점증 구조로 재설계

* (현행)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 (개정) 실제 근로 기간 1년 이상

③ 적용 시점

□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5.12.31. 이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강화

① 현행 제도

□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 폐쇄·축소후 국내 복귀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 7년간 100%, 3년간 50%(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2년간 50%)

○ 완전복귀와 달리 부분복귀의 경우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이전에 국내복귀하는 경우에는 감면 배제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국외사업장 축소완료 이전에 국내로 복귀한 후, 사후적으로 국외사업장 축소완료하는 경우도 세액감면

	先구조조정-後복귀	先복귀-後구조조정
완전복귀(국외사업장 양도 · 폐쇄)	O	O
부분복귀(국외사업장 축소)	O	X → O

ㅇ 4년 내에 축소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

□ (개정 취지) 기업이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탄력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턴형태에 대해 지원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③ 적용 시점

□ (소득·법인세) '26.1.1.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 (관세)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1)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낮은 배당성향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으로 지적

ㅇ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 및 경제 선순환 제고

□ (개정 내용)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허용

ㅇ (고배당기업)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서 ❶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❷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 공모 · 사모펀드, 부동산리츠, SPC 등 제외

ㅇ (대상) 고배당기업 주식 소유 거주자

ㅇ (특례소득) 현금배당액(중간 · 분기 · 결산배당)

ㅇ (적용세율) 3단계 누진세율

과세표준	2천만원 이하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적용세율	14%	20%	35%

② 시행 시기

□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귀속되는 배당액에 대하여 지급

ㅇ 따라서, 시행 첫 해에는 ‘27년도 결산배당을 통해 산정되는 배당성향 및 배당증가액에 의해 고배당 기업 여부 판정

③ 적용 사례

□ (가정) A기업이 ’26년 사업연도 기준으로 ‘26.8월에 중간배당(❶), ’27.4월에 결산배당(❷) 시행

ㅇ A기업의 ‘26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

□ (특례 적용)

ㅇ A기업 주주는 ’27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27.5월)를 통해 ’26년 소득인 중간배당(❶)에 대해 특례 적용 가능

ㅇ ’27년 소득인 ’26년 사업연도의 결산배당(❷)은 ‘28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28.5월)시 특례 적용 가능

④ 납세 절차

□ 특례 대상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원천징수를 통해 종결

□ 특례 대상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특례 적용을 위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시 함께 신고할 필요

(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① 현행 제도

□ (적용대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 (과세방식)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지출액으로 환류한 금액이 당기 소득의 일정 비율에 미달한 경우 20% 추가 과세

ㅇ Ⓐ, Ⓑ 방식 중 선택 허용

Ⓐ [기업소득 × 70% -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 20%

Ⓑ [기업소득 × 15% - (임금증가+상생협력)] × 20%

※ 당기소득 3천억원 초과분은 제외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의 비율 상향

구 분		현 행	개 정 안
환류대상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액	(좌 동) + 배당
기업소득비율	투자포함형(Ⓐ)	60~80%*	65~85%
	투자제외형(Ⓑ)	10~20%**	20~40%

* 대통령령에서 70%로 규정 / ** 대통령령에서 15%로 규정

□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③ 배당을 환류대상에 포함한 이유

□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극복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필요

ㅇ 배당 증가시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 및 배당을 선호하는 주주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선순환 기대

3. 지역성장 지원

(1)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현행 제도

□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투자 또는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기업이 사업재편(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신사업 진출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작성하여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계획

○ (적용기한) '26.12.31.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매각 시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현재 여수 지정)

□ (개정 취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취지를 고려

○ 해당 지역 주된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해 위기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업 경쟁력을 조기에 회복하도록 지원

(2)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① 현행 제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 감면율은 이전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최대 12년간 감면

* ❶ 5년 100% + 2년 50% : 수도권 연접지역, 지방 5대 광역시, 중규모도시 (인구 30만 이상) 등
  ❷ 7년 100% + 3년 50%: 지방 5대 광역시 및 중규모도시 중 낙후지역 등
  ❸ 10년 100% + 2년 50%: 그 외 낙후지역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기간 확대, 감면한도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28.12.31.)

- ㅇ 100% 감면기간 종료 후,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연장
- ㅇ 중규모도시* 내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10년간 100% + 5년간 50% 감면
  - *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및 포항시의 관할구역

<지방이전 세액감면기간 확대>

	낙후지역[1]		그 외 지역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수도권[2]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 감면 없음 〉	
수도권 연접지역[3]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3년 50%	7년 100% +4년 50%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도시	7년 100% +3년 50%	10년 100% +5년 50%	5년 100% +2년 50%	5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10년 100% +5년 50%	7년 100% +3년 50%	7년 100% +4년 50%

1」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고용 · 산업위기지역

2」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본사 이전은 미적용)

3」 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홍천군(내면 제외), 횡성군

- ㅇ 이전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 신설*
  - * 지방 투자누계액의 70% +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개정 취지) 인구감소지역 등 낙후지역으로의 지방이전 촉진 유인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투자·고용 확대 유도

③ 적용 시점

□ '26.1.1.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ㅇ '25.12.31. 이전에 기존 공장・본사를 철거・폐쇄하는 등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2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1. 서민 · 중산층 · 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1)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① 현행 제도

□ 근로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25.12.31.)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주요내용 >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공제대상</td><td>○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td></tr>
<tr><td>공제율</td><td>○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등 :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체육시설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td></tr>
<tr><td>공제한도</td><td>
<table>
<tr><th>총급여 / 공제한도</th><th></th><th>7천만원 이하</th><th>7천만원 초과</th></tr>
<tr><td colspan="2">기본공제 한도</td><td>300</td><td>250</td></tr>
<tr><td rowspan="3">추가공제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3">300</td><td>200</td></tr>
<tr><td>대중교통</td><td rowspan="2">200</td></tr>
<tr><td>도서공연등</td><td>-</td></tr>
</table>
</td></tr>
</table>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 및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

		현행	개정안		
		(자녀수 무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기본 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
추가 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좌 동)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200만원			

□ (개정 취지) 자녀 양육에 따른 생계비 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근로자 세부담 경감

* 월평균 가계지출('24.4분기) : (전체) 391만원
(1인가구) 232만원 (2인가구) 351만원 (3인가구) 506만원 (4인이상) 630만원

③ 총급여 기준에 따라 한도 상향폭을 차등한 이유

□ 차등하지 않고 한도상향시 실효세율이 높고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

⇨ 한도 차등을 통해 서민·중산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귀착되도록 설계

④ 적용 사례

□ 부양자녀 2명, 상향된 한도까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도 상향에 따른 세부담 감소 사례

		총급여 6천만원	총급여 1억원
현 행	근로소득공제	1,275만원	1,475만원
	기타 소득공제 합계*	1,300만원	1,700만원
	과세표준	3,425만원	6,825만원
	한계세율	15%	24%
개정안	근로소득공제	1,275만원	1,475만원
	기타 소득공제 합계*	1,400만원(+100만원)	1,750만원(+50만원)
	과세표준	3,325만원(-100만원)	6,775만원(-50만원)
	한계세율	15%	24%
세부담 차이		△15만원	△12만원

* '23년 귀속 근로소득세 신고자료상 해당 급여구간 평균 소득공제액(근로소득공제 제외)

(2)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① 현행 제도

□ 근로자·성실사업자 등의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 월세세액공제 주요내용 >

대상자	무주택자로서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 7천만원) 이하 세대주*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수도권 및 도시지역: 85㎡ 이하, 수도권 외: 100㎡ 이하
공제율·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17%(5,500만원 초과자 15%), 연 월세액 1천만원

*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고, 3자녀 가구에 한해 월세세액공제 대상주택 규모 상향

❶ (대상자)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부부합산 연 1,000만원)

*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에 위치

❷ (대상주택) 3자녀 이상인 경우 국민평형 이상 주택도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적용대상 주택 규모 상향*

* (현행)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 (개정안) 지역구분 없이 100㎡ 이하

□ (개정 취지) 혼인·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비 경감 지원 강화

❶ (대상자) 최근 주말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나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세대당 1인만 공제 가능하여 혼인 패널티로 작용

* 맞벌이 중 비동거가구(%): ('20)10.9 ('21)12.8 ('22)12.3 ('23)13.3 ('24)14.1

※ 세대주가 공제받으면 배우자 등 여타 세대원은 공제받지 못함

❷ (대상주택) 저출생 극복을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월세 세제지원 강화

* 85㎡ 이하 주택의 경우 방 개수가 3개이므로 다자녀 가구에 적합하지 않은 점 고려

③ 적용 사례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 각자 월세 세액공제 적용]

□ 신혼부부인 A, B는 각각 총급여 7천만원인 무주택 세대로서 직장이 달라 서울, 충청에 각각 원룸을 구해 생활 중

ㅇ A는 서울에서 월 50만원, B는 충청에서 월 30만원 월세계약을 체결
ㅇ (현 행) 근로자 A 또는 B 중 1인만 월세 세액공제 가능
- A: 월 50만원 × 12개월 × 15% = △90만원 세액공제
ㅇ (개정안) 근로자 A, B 모두 각자 월세 세액공제 가능
- A: 월 50만원 × 12개월 × 수도권에 소재하는 방이 4개인 아파트(전용면적 96㎡)에서 월세(월 100만원)로 거주중
ㅇ (현 행) 월세 세액공제 불가(국민주택규모* 초과)
* 수도권 및 도시지역: 85㎡ 이하, 수도권 외: 100㎡ 이하
ㅇ (개정안) 월세 세액공제 가능
- 연 월세액 1,000만원(한도) × 15% = △150만원 세액공제

(3)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① 현행 제도

□ 사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시 저율 분리과세
* 연금저축계좌(보험·펀드·신탁) + 퇴직연금계좌(DC형, IRP 등)
ㅇ (본인 납입액 중 세액공제분·운용수익) 연금 수령나이에 따라 3~5%*, 사망시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 계약시 4%** 적용
* 연금소득(1,500만원↓)세율: (55~69세)5% (70~79세)4% (80세 이상)3%, (종신) 4%
** 종신계약의 경우 4%와 연령별 세율 중 낮은 세율 적용
ㅇ (이연퇴직소득*) 연금 수령시 수령연차에 따라 연금외수령시 세액**에 비해 30~40% 감면(10년 이하: 30%, 10년 초과: 40%)
* 사용자부담 퇴직금으로서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아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
** 연금외수령시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이연퇴직소득세에서 연금외수령한 비율만큼 원천징수)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연금 형태로 수령시 저율 분리과세 세율 인하
ㅇ 본인 납입액 등을 연금으로 종신수령시 세율 4 → 3% 인하
ㅇ 퇴직소득을 '20년 초과 연금수령시 감면 확대(감면율: 40→50%)

□ (개정 취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일시금 대신 장기 연금수령 유도 필요

3.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1)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

① 현행 제도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한 자(배우자·직계존비속)가 당초 취득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 계산(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단,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 당시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이월과세 적용 배제)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배제(현행 배우자 사망한 경우와 동일)

□ 이월과세는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운영 중

<조세회피 적용 사례>

<table>
<tr><td>'05년</td><td colspan="2">❶ A, 1억에 건물 취득</td></tr>
<tr><td>'20년</td><td colspan="2">❷ A → B(A 배우자)에게 증여, 증여재산가액 6억
↳ 증여세 부담 없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원 적용</td></tr>
<tr><td>'22년</td><td colspan="2">❸ B, 6억에 건물 매도</td></tr>
<tr><td></td><td>〈A 생존시〉</td><td>〈A 사망시〉</td></tr>
<tr><td></td><td>■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이월과세 적용 O] 양도세 부담 있음
양도차익 = 6억원양도가액 – 1억원A 취득가액=5억원</td><td>■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배제
▸[이월과세 적용 X] 양도세 부담 없음
양도차익 = 6억원양도가액 – 6억원증여재산가액</td></tr>
<tr><td></td><td>■ (상속세) 해당 없음</td><td>■ (상속세) 납부 ➔ 조세회피 가능성 없음
▸A 사망시 상속세과세가액에 6억원(사전증여재산*) 포함, 상속세 납부</td></tr>
</table>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 다만, 양도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사망과 마찬가지로 조세회피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월과세 적용 배제

ㅇ 특히 직계존비속의 경우 증여공제규모(5천만원)가 배우자(6억원)보다 크지 않아 조세 회피 가능성이 높지 않은 측면

(2)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

① 현행 제도

□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의 0.022% 가산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납세자가 직접 일 단위 계산·납부하는 불편 완화

* 납부고지일까지는 과세관청이 가산세를 산정·고지하므로 현행 유지

□ (개정 내용) 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일(日) 단위 → 월(月) 단위로 산정

<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현행-개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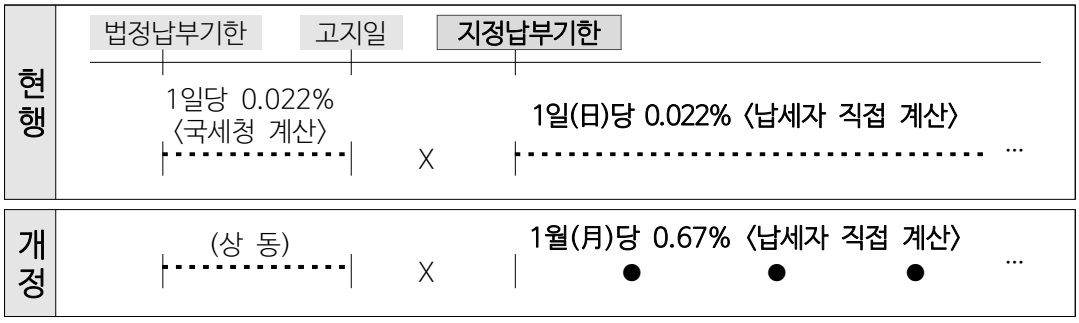

(3)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

① 현행 제도

□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등기*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세액에 대한 50만원 미만의 고지서는 일반우편 허용

* 등기우편은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우편법 시행령 §6)

ㅇ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신고 후 무(과소)

납부세액은 고지서 발송 예측이 용이하므로 일반우편 대상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행정비용 절감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
- ㅇ 일반우편 발송시 송달비용 연간 약 100억 원 절감 기대
- ㅇ '02년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금액기준(50만 원)이 유지되어,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기준 상향 필요
  * 소득세·부가세 부징수 금액기준 인상(30→50만원) 등으로 제한적으로 적용

□ (개정 내용) 적용대상 확대 및 금액기준 상향
- ㅇ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후 무(과소) 납부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경우에도 일반우편 발송 허용
- ㅇ 일반우편 발송가능 금액 기준은 50만원→100만원으로 상향

3 세입기반 확충 및 제도 합리화

1.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1) 법인세율 환원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부담 정상화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과세표준(억원)	현행	개정안
~ 2	9%	10%
2 ~ 200	19%	20%
200 ~ 3,000	21%	22%
3,000 ~	24%	25%

□ (개정 취지) 지난 정부에서 경기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측

면

* 조세부담률(%): ('20) 18.8 ('21) 20.6 ('22) 22.1 ('23) 19.0 ('24p) 17.6

** 법인세수 실적(조원): ('22) 103.5 ('23) 80.4 ('24) 62.5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세입기반 마련이 선결 과제임

②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역행하는 것 아닌지

□ 최근 세계 주요국은 경제·정치상황 및 재정여건 등에 따라 조세정책을 운용하는 방향도 상이

○ 최근 영국·프랑스도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등, 증세 또는 감세의 일방적 방향이 글로벌 트렌드는 아님

* (英) '23년 법인세율 19 → 25% 인상
(佛) '25년 대기업에 한해 한시적('25년) 법인세율 인상
(기본 법인세율 25%, 매출액 10억유로 이상 +5.2%p, 30억유로 이상 +10.3%p)

□ 법인세율 인상시 OECD국가 중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인 국가들과 비교하여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비슷*한 수준

* OECD 중 G20국가: 23.4%(지방세 포함 27.4%),
OECD 중 30-50국가(GDP 인당 3만불-5천만명): 22.5%(지방세 포함 27.2%)

(2) 증권거래세율 환원

① 현행 증권거래세율 및 최근 조정 연혁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코스피		0.15%	0.10%	0.08%	0.08%	0.05%	0.03%	0%
	농어촌특별세	0.15%	0.15%	0.15%	0.15%	0.15%	0.15%	0.15%
코스닥		0.30%	0.25%	0.23%	0.23%	0.20%	0.18%	0.15%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연계하여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였으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따라 재검토

○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도 불분명

□ (개정 내용) 증권거래세율을 '23년 수준(0.05%p 인상)으로 환원

③ 시장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
* '19~'24년 증권거래세율 5회 인하 후 거래대금 2회 감소, 주가지수 1회 하락
(인하 전후 6개월 평균 비교)
○ 대내·외 경제 상황 등 경제 환경이 주식시장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

(3)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① 현행 기준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 한하여 분리과세하며, 과세표준 3억원을 기준으로 20%·25% 세율로 과세
* 종목당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분율 1~4% /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구 분(종목당)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	2%	4%
시가총액	50억원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대주주 기준 완화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형평성 저해 우려에 따라 환원
* 대주주 기준이 변경된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하락이 혼재
- '17년말 대주주 기준 강화시 주가가 상승한바 있으며, '23년말 대주주 기준 완화시 주가가 하락한바 있음
○ 자본이득 중심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조세체계에 따라 기준을 강화하여 과세형평 확보

□ (개정 내용) 종목당 시가총액 기준을 50 → 10억원 이상으로 조정

③ 양도세 회피를 위한 연말 매도 증가 등 시장 불안정은 없는지?

□ 기준 조정에 따라 대주주를 회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의 연말 매도 완화 효과는 불분명*
* 기준이 변경되지 않은 연도 간에도 순매수·순매도의 일관성이 없으며 기준이 강화된 '17년, '19년에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가 있으나 기준이 완화된 '23년도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

□ 시장 수익율이 매도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

2. 과세체계 합리화

(1) 비과세·감면 정비 현황

□ 일몰도래 72개 중 정비(종료·축소) 실적은 16개(5년간 4.6조원)로, 최근 5개년 평균 실적(13개, 5년간 0.5조원) 대비 적지 않은 수준

* 정비 개수(조원, 5년누적): '20년14개(0.3) '21년19개(0.1) '22년12개(0.5) '23년9개(0.1) '24년12개(1.4)

□ 다만, 비과세·감면 대부분이 서민·중산층 및 농어민 지원, 투자 등 기업 활동 지원 관련으로 제도 연장이 불가피한 측면

ㅇ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등 계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비과세·감면은 제도개선을 통해 효율성 제고

(2)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① 현행 제도 및 개정 취지

□ (현행 제도) '25.1.1.부터 펀드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이 변경*되었으나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미적용 중

* (기존) 국세청 선환급 방식 → (개정) 투자자별 펀드 소득 발생 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차액을 원천징수

** 연금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 (개정 취지)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되,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점과 인출 시점 간 장기 시차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공제 방식* 규정

* (일반 배당소득) 펀드가 계좌에 배당소득 지급 즉시 원천징수 및 외납공제 적용
(연금계좌 소득) 펀드가 연금계좌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원천징수가 없으므로, 연금계좌로부터 소득 인출에 따른 원천징수 전까지 외납공제액 적립

② 시행일('26.7.1.) 이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는?

□ 시행일은 연금 사업자(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내부 전산시스템 등 준비기간을 고려했으며,

○ 공제 방식 변경 시점('25.1.1)부터 시행일 전까지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공제액을 적립할 계획

③ 적용사례

※ 간접투자소득 1,000, 국외원천세율 14% 가정

□ (적립단계) 외국납부세액 140, 외납 後 소득 860, 공제적립액 77.4*

* 140 × {(9%/14%) - 9%}
  외납세액 ↳ 공제율(약55.3%)

(5)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

① 내국추가세 개요 및 적용 예시

◇ 다국적기업그룹 국내구성기업의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 적용 시 부족과세분을 우리나라에서 우선 과세*

* 소재지국 미과세시 모기업소재국(IIR) → 타 구성기업 소재국(UTPR) 순으로 과세권 이전

□ (대상) 연결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 소속 국내구성기업

□ (내국추가세액 계산)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 전체의 실효세율 계산 후,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

※ 내국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내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초과이익* +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실질 사업활동 지표인 '인건비'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일정비율)을 제외

□ (추가세액 납부) 추가세액의 그룹 내(각 기업별) 배분은 소득에 비례하여 배분함이 원칙이나, 기업의 재량도 허용

3.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1) 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

① 현행 제도

□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은 경우 그 영리법인은 법인세 납부의무만 있고 상속세 납부의무는 없음

□ 다만, 영리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 및 그 직계비속은 유증재산의 지분상당액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 부담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를 주주로 하는 영리법인에 유증을 통한 상속세 회피 방지

ㅇ 며느리나 사위를 주주로 하는 법인을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조세회피 방지 필요

□ (개정 내용)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유증을 받은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외에 “그 배우자”를 추가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8월 1일(금)	8월 4일(월)	8월 5일(화)	8월 6일(수)	8월 7일(목)
미 달 러 (USD)	1390.40	1399.30	1384.90	1386.70	1389.50
일 본 엔 (JPY)	922.78	950.10	943.42	939.66	943.89
영 국 파 운 드 (GBP)	1836.72	1857.99	1841.29	1844.17	1856.23
캐 나 다 달 러 (CAD)	1003.65	1015.35	1005.66	1006.79	1011.28
홍 콩 달 러 (HKD)	177.13	178.26	176.43	176.66	177.02
위 안 화 (CNH)	193.18	193.95	192.70	193.20	193.15
유 로 화 (EUR)	1588.18	1620.60	1604.13	1605.31	1620.43
호 주 달 러 (AUD)	894.37	904.65	896.38	897.47	903.94
싱 가 폴 달 러 (SGD)	1071.39	1085.36	1076.15	1077.13	1081.20
말레이시아링기트 (MYR)	326.00	327.13	326.82	328.02	328.49